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6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12. 06.(화) 14:0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6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0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6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에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사항>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사항

가. (주)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6-68-25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주)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피심인 추가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은 먼저 지난번에 피심인 의견진술 및 추가 제출자료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최대 접속시간 제한 관련해서는 인터파크는 HQDB에 2시간 접속시간 제한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적용되고 있었다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단순히 해당 PC의 화면보호기 기능을 10분으로 설정하였다는 의미이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외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PC방의 로그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직원 B의 PC에서 파일압축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파일의 용량이 줄어든 것이지 개인정보 파일은 전부 전송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커 동영상 관련해서도 인터파크를 다시 방문해서 지난 5월 4일~6일까지 그리고 7월 11일에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 SQL Developer를 사용하여 접속한 이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볼 때, 외부에서 촬영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PC는 노후화 및 보드고장으로 정상적인 내부 절차에 따라 폐기한 것으로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증거인멸은 아니고 경찰청이 초기화를 권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내 PC를 포맷한 행위를 의도적인 증거인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진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진술인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의견진술인 입장)

인터파크 측에서 김광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김광준 변호사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박준용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 김정연 (주)인터파크 법무팀장

- 인터파크의 법무팀장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 김정연 (주)인터파크 법무팀장

- 김정연 변호사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현재 인터파크의 법무팀장이십니까?

○ 김정연 (주)인터파크 법무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난번에 의견진술을 하셨고 그다음에 추가로 스스로 제출하시겠다고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출을 부탁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보고 조금 전에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들으셨지요?

○ 김정연 (주)인터파크 법무팀장

- 예, 들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견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의견진술 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나름대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나온 것 같은데 그 말씀도 같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제가 김광준 변호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광준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지요.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대평양 변호사

- 일단 먼저 피심인이 해킹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심인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통감하며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만, 피심인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심에 있어서 다음 몇 가지 사항만은 꼭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사건에서 유출경로로 지적된 직원의 PC가 폐기된 점에 관해서는 경찰에서도 관심을 갖고 수사를 했습니다만 이전에 그 보고에서도 이루어진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폐기하지 않았던 점이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으므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피심인이 법령상 정해져 있는 방통위 등 유관기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만을 보실 것이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도 꼭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유출사고 발생 시 이를 국가기관에서 알려 제2차 피해방지 등의 조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피심인은 같은 국가기관인 경찰에 이를 신고하여 해커 검거 및 경찰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PC를 클린징 하는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고, 이는 아예 신고하지 않고 해커와 타협을 시도하는 사고은폐 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군이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신종악성코드가 유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국방부 내부 인트라넷인 국방망의 일부 PC에도 같은 종류의 악성코드가 감염되어 군사기밀을 포함한 일부 군사자료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국방부장관의 PC도 뚫렸다고 합니다. 최고의 보안 수준을 갖춘 사이버사령부도 해킹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해킹기술이 고도화되어 있고 해킹기술은 보안기술보다 항상 앞서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아무리 보안 수준이 높더라도 해킹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본 건도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해킹이 발생한 결과만이 아니라 인터파크가 당시 갖추고 있었던 보안 수준, 본 건 해킹기술의 수준, 금전을 갈취하려고 한 해커와 타협하지 않고 신고한 점 등을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데 있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심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APT와 같은 치명적인 해킹 공격에 대응한 태세를 갖춰 왔고 그간 고객의 정보보호를 회사의 중대한 목표로 나름대로 예상되는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300여개의 세부 항목 기준을 충족해야 통과되는 법령상 요건보다 엄격한 PIMS 인증을 받은바 있고, 비록 해킹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당시 보안 수준이 높았다는 점은 방통위 및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피심인은 보안에 바늘구멍만한 허점만 있어도 해킹으로 인한 유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고, 이에 따라 보안 강화를 위해 물리적 망 분리를 시행하는 등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심인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심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타의 유사한 사례들에 비춰 피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타 보고과정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대 접속시간 부분에 있어서 PC에 의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화면보호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화면보호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외부로 유출한다는 증거에 있어서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아마도 그 PC방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에서 유출되었다는 흔적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 의견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압축된 파일이 온전하게 전송되기 위해서는 단 1바이트의 누락도 없어야 하는데 경찰이 아무리 그 흔적을 찾았다 하더라도 당해 그 파일들이 온전하게 복구가 되어야 하는지, 복구된 내용은 어떠한지, 복구된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존의 해킹사고는 해커들이 검거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파일들을 확인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동영상 촬영 부분에 대해서 인터파크는 지난번 회의 이후에 경찰로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당한바 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해커의 동영상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시현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터파크 내부에서 DB의 그 파일들을 조회하면 데이터 배열순서가 예컨대 A, B, C, D 알파벳 순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파일들을 외부로 데이터를 옮겨서 조회를 하면 알파벳 순서가 흐트러져서 A, B, C, D 순서로 정렬하기 위해서는 오더바이(Order by)라는 특정 명령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해커의 동영상을 보면 이런 오더바이(Order by) 명령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 유출된 증거로 볼 수 없고 내부 조회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한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법무팀장께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김정연 (주)인터파크 법무팀장**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진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모두발언에서 물론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 해킹이었다' 그런 중간수사 결과발표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국방부장관 PC까지 뚫렸다고 하는 이런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과 관계가 있다고 아직 믿으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경찰 중간수사 발표에서 나온 점들을 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아까 설명하실 때 오늘 국방부가 뚫린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과 같은 종류

의 해커가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것입니까?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에서 그런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인터파크도 같은 해커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북한 정찰총국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만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 정찰총국인 점은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설령 같은 해커에 의해서 뚫렸다 하더라도 사후에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사무처 판단입니다. 우선 화면보호기 기능,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2시간 접속시간 제한기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단순히 화면보호기 기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아까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저희들이 흔히 PC를 사용할 때 보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화면보호를 위해서 꺼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일정한 키보드를 누르면 다시 화면이 떠오르게 되어 있는데 인터파크에서 설정한 기능은 단순히 그런 화면보호기 차원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PC의 접속이 끊어지고 다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 접속이 되는 형태로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날 7월 9일부터 3일간 접속기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 조사….

○ 최성준 위원장

- 5월 4일~5월 6일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5월이지요. 그것이 조사가 됐는데 그 부분은 해명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현재 밝혀진 그런 부분과 정확하게 당시에 어떤 기능들이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난번에 다 짚어봤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와서 소명하신 이후에 방통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충분히 제출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직접적인 그런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고, 다만 한 가지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참작이 되지, 나머지 부분은 정확하게 그 근거를 대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상 소명하실 것은 없지요?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저희들은 자료는 충분히 제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최대 접속시간 제한 관련해서 이 표현을 '화면보호기'라고 표현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용어를 제외하고 실질로 살펴보면 PC가 접속이 끊어지는 것, 다시 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그 PC를 원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내 PC와 HQDB와 사이에 접속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화면보호기를 살린다는지, 여기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서 내 컴퓨터가 다시 활성화 되도록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내 컴퓨터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HQDB와 연결이 10분이 지나면 끊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정연 (주)인터파크 법무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주장하신 것처럼 2시간이 지나면 PC와 HQDB 사이에 접속이 자동적으로 끊어 집니까?

○ 김정연 (주)인터파크 법무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접속이 끊어지는 기능이 작동되고 있었는지 하나도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본 우리 조사관이 어디에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철 사무관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 **황선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예, 맞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 현장에 가서 인터파크 측과 그 부분에 대해 같이 확인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 인터파크 측에 저희가 요청했던 것이 “2시간 이상 HQDB에 접속한 이력이 많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자동으로 로그가 된 기능이 있었으면 아마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만약에 차후라도 그 기능이 활성화된 기록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 제출은 없습니다.

○ **김정연 ㈜인터파크 법무팀장**

- 저희가 드린 말씀은 PC에 대하여 조치했던 바는 PC에서 잠금 설정이 되면 HQDB와 차단이 끊어지도록 설정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당시에 왜 그와 같이 차단이 끊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해커가 어떤 수단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갔는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당 자료를 지금 찾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 다른 때에도 3일씩 연결되어 있었던 사례를 저희가 전부 찾았습니다. 그것은 해커가 들어와 있지 않은 때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3일 동안 연결되어 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해커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 **김정연 ㈜인터파크 법무팀장**

-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직원의 일부가 계속 그렇게 접속을 유지했던 기록들을 찾았고, 그것이 단 1명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날에는 3, 4명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터파크가 24시간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업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장애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직원들이 계속 접속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런 직원들이 발견됐다, 그런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해서 당시 HQDB의 2시간 최대 접속시간을 설정하지 않은 그런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접속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일단 PC상으로 어떻게, 이를 테면 엔터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실제로 2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끊어지는, 컴퓨터 자체가 비활성화된 것이 아니고 HQDB와의 사이에 접속이 끊어지는 기록을 지금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 제출할 것이 있습니까? 저희 조사관은 그 기록을 11월 22일에 가서 확인했더니 “없다”는 것이고, 인터파크 측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이후라도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제출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 김정연 (주)인터파크 법무팀장

- 다른 측면에서 의사소통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측면이 아니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것 같으면 오늘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안 여쭙 보는데 그것이 지금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 김정연 (주)인터파크 법무팀장

- 저희가 요청받았던 것은 해킹사고 당시에 PC HQDB가 왜 끊어지지 않았느냐,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도 왜 끊어지지 않았느냐,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끊어져야 하지 않느냐, 끊어진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받았고 저희는 그 증거는 찾지 못해서 못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오늘이라도 그와 같이 PC에 설정되어 있고 HQDB...

○ 최성준 위원장

- 오늘은 소용이 없고 5월 8일, 9일, 10일, 11일 그 이후에 7월까지 많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끊어진 기록이 있습니까?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말씀하시는 취지에 비춰 보면 최대 접속시간 2시간이 지났을 때도 끊어진 기록을 찾아내는 것은 아마도 일과시간이나 야근을 하는 평상시 작업에 대해서 그런 기록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업체에서 특히나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를 태면 1시간 59분이 지나서 다시 또 엔터를 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접속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그런 기록들을 찾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록들을 찾아본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김정연 (주)인터파크 법무팀장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그와 같은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인위적인 실험을 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지요.

○ 김정연 (주)인터파크 법무팀장

- 당시와 같은 설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정리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설정을 해 놓았는데,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설정은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또 작동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해커가 그것을 어떤 해킹의 기법으로 침투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접속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 빼내 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왜 뚫렸는지를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 김정연 ㈜인터파크 법무팀장

- 무력화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과 같은 차단조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접속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커가 알고 있었다면 접속이 유지된 상태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끊어지는 기록을 저희가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계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커가 넣은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까?

○ 김정연 ㈜인터파크 법무팀장

- 그 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증명 안 되는 것이지요.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방통위에서도 해커가 직원 PC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것이 김광준 변호사님은 지난번 의견진술 할 때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가 시스템상으로 기능은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을 했고, 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자나 정보보안책임자가 왔을 때는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 못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소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자료는 없고 우리가 받은 자료를 보면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해킹의 원인 그리고 경로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었고 회사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찾기 어렵다고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지요?

○ **김정연 ㈜인터파크 법무팀장**

- 자료의 수준을 어떤 수준까지 드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받았던 것은 처음에는 “HQDB상에 끊어진 기록이 있느냐?” 했을 때 “당시에는 안 끊어졌었다”, “그렇다면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해 놓았느냐?”에 대해서 인터파크는 “PC에 그와 같은 차단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라는 소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PC에 그와 같은 차단 조치했다는 자료는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해가 안 되네요.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PC에 차단 조치를 해서 작동되도록 해 놓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스템이 될지 프로그램이 될지 프로그램에 2시간 차단이라는 기능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켜 놓았는지와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 **김정연 ㈜인터파크 법무팀장**

- 활성화도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황선철 사무관,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다른 자료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황선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지금 현재 활성화된 부분은 자료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킹사고 이후 6월 17일경에 문상훈 차장이 직접 SQL DB에 명령어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단순조회 명령어였습니다. 그런데 단순조회 명령어를 보내고 나서 2시간 후에 자동접속이 로그아웃이 됐느냐? 그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로그아웃 기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6월에 꽤 오랫동안 접속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 **황선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당시에 3일 정도 접속이 있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3일 정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끊어지는 것을 싫어해서 엔터키를 친다든가 무엇을 조작한다든지 그러면 3일 동안 밤낮 잠 안 자고 그 접속을 유지하려고 계속 2시간 마다 그러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고 위원님!

○ **고삼석 상임위원**

- 회사 쪽에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김 변호사님 그때 당시에 의견진술하려고 참석하셨으니까 위원회에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인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받기로는 전혀 관련된 소명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기능은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특히 그 침투의 경로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 PC가 3일 동안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상태가 유지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까?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2시간이 지나도 끊어지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늦었다고 하지만 그런 기록들이 있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사하러 현장에 직접 나갔고, 또 11월 22일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갔던 황선철 사무관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전혀 확인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정연 ㈜인터파크 법무팀장**

-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기록에 남기 어려운 이유는 업무시간 중에는 어차피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지 않습니까? 6월에 3일 동안 연결되어 있던 것을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3일 동안에 왜 2시간 이후에 끊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정연 ㈜인터파크 법무팀장**

-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는 저희도 알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기 어렵다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지요.

○ 김정연 ㈜인터파크 법무팀장

-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와 같은 일이 회사에 실제로 설정이 안 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왜 꼭 1건만 발생할 수 있는지도 저희는 의문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 근무시간 중에서는 계속 작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퇴근하고 갈 때 끄고 가니까, 그렇게 2시간 이상이 별로 발생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 김정연 ㈜인터파크 법무팀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없는 것이지요. 없다가 우연히 그때 하여간 그 직원이 실수든 뭐든 해서 그냥 컴퓨터를 끄지 않고 그렇게 오래 놓아뒀었는데 그때 3일 동안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HQDB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2시간의 시간이 경과하면 그것이 끊어지도록 작동이 된다면 그때 작동이 안 된 것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그것은 2시간이후에 끊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구나'라고밖에 생각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김정연 ㈜인터파크 법무팀장

- 예, 맞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방통위 신고 안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지연한 것, 인터파크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정보통신망법상 24시간 이내에 방통위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이 제도, 규정은 인터파크 측에서 법무팀장님이든 아니면 CPO든 CISO든 누구든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늦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 자체를 모르신 것입니까? 아니면 뭐...

○ 김정연 ㈜인터파크 법무팀장

- 저는 당시에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방통위 신고가 갈음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니까 인터파크 같은 이런 규모가 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이면 그것이 CPO든,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CPO도 있고 CISO도 있고, 또 법무팀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 변호사님이 경찰에 협조하는 그런 사정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방통위에 신고를 늦게 한 것, 결과적으로 또 이용자에게 통지를 늦게 하게 된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있었다는 점을 다 인정하고, 다만 신고를 안 한 것들이 어떤 은폐 의혹이 없었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회사 경영진도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 같고, 또 협박메일을 통해서 해킹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수사가 당시 한 20여명이 나와서 수사하는 그 상황에서 경찰이 7월 22일에 이용자보호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PC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악성코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PC를 포맷하는 요청까지 받아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통위에 신고하는 것이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신고가 없어서 감경사유로 안 되어 있지만 신고를 안 한 것이 어떤 은폐 의도가 있거나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해커 검거를 위한 수사가 진행됐던 부분을 참작하신다면 사실상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아까 접근통제의 문제, 저는 더 이상 이것은 의견교환 내지 진술·청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접근통제 기술적 조치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접근통제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스템 내에 설치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게끔 계속 누군가가 유지관리를 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파크 내부의 직원들이 접근통제시스템을 왜 설치하느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개별 직원들이 또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서 결국 접근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해커들의 액세스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면, 이런저런 이야기 가지고 기록이 있다,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자체는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또 개인정보처리자, 이 시스템에 접근하는 개별 직원들이 제대로 관리 내지는 그 기준에 맞게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두 번째, 세 번째가 결합이 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료가 있다 없다,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이 논의는 이쯤에서 그냥 마치면 좋겠고, 결국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 개개인이 판단하면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답변을...

○ 최성준 위원장

-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일단 취해 놓은 기술적 조치가 제대로 운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터파크로서도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보안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킹의 경로라든가 그다음에 어떠한 정보들이 유출됐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질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지만 6월 17일에 단 1건도 HQDB 접속시간이 끊기지 않았다는, 3일 동안 끊기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해킹될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HQDB의 최대 접속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지 않나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토의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최종적으로 유출단계에 있는 김 모 직원의 PC를 노후화 및 보드고장으로 정상적인 내부 절차에 따라서 폐기한 것이고 고의적이었거나 어떤 의도적인 증거인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파크에 협박 이메일이 온 것이 7월 초고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된 것이 7월 12일이지요?

○ 김정연 ㈜인터파크 법무팀장

- 예.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7월 12일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김 모 직원의 PC가 폐기된 것은 7월 29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계속 주장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 많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됐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김 모 직원의 PC를 보면 유출됐는지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경찰에 신고되고 경찰이 수사하는 와중에도 아직 폐기는 안 되고..., 물론 뻘쪄요. 컴퓨터를 빼고 다시 관리는 되고 있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그것을 아직 폐기 전이니까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툼이 있는 개인정보가 진짜로 얼마만큼 유출이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소홀히 됐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제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워낙 많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유출이 됐는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기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시다만 신고라는 것이 방통위가 별도의 다른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통위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용자들 보호를 위해서는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면 이용자들에게 빨리 통지해

서 이용자들이 자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방통위에 신고하고 이용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을 지체 없이 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파크가 조금 소홀히 하셨다,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견진술인 퇴장)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9페이지를 보니까 팀장님, <다> 개인정보 유출사실 이용자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행위에서 '이용자 통지 및 방통위에 신고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렇게 자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앞부분에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서는....

○ 최성준 위원장

- 조금 표현이 그렇기는 하네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통지 및 방통위에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참 말이 어렵네요.

○ 최성준 위원장

- 말은 어려워도 의미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시정조치(안)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시정명령은 인터파크에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부과 기준율을 적용하여 기준 금액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1년 초과 2년 이내에 중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25%를 필수적 가중한 후에 최근 3년간 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50%를 필수적으로 감경하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B의 PC를 현장조사 기간 중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천공하여 폐기한 점, 방통위에 유출사고 신고 이전에 사전 협의도 없이 사내 전체 PC를 초기화한 점, 유출사고 이후에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축소 발표한 점을 고려해서 20%를 추가적으로 가중한 후에,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점을 고려해서 다시 20%를 추가적으로 감경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7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행위별로 각 1,000만원 기준금액으로 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행위는 2개 이상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하고, 다음 쪽은 특별히 감경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5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안 여쭙았는데 인터파크 측에서는 또 자료를 찾아보겠다는 듯한 이야기도 했는데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제출이 필요하지는 않겠지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조치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 김석진 상임위원

- 전반적으로는 제가 다 동의하고, 다만 12페이지를 보니까 표현이 추가적 가중·감경의 사유로 직원 B의 PC를 천공하여 폐기한 점, 또 사내 전체 PC를 초기화한 점 이 사유를 들어서 추가적 가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처 검토의견에 보면 사내 PC 폐기와 초기화에 대해서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증거인멸은 아니다, 또 의도적인 증거인멸로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이거나 또는 고의적이라고 할 경우에는 조사 거부·방해로서 사실은 추가적 가중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조사 거부·방해까지는 이르지 않는 아니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 같은데 추가적 가중·감경의 사유란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부분이 아까 보고한 것과는 조금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아까 보고할 때 검토의견에는 고의적인 증거인멸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결서를 보니까 추가적 가중·감경은 오히려 이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천공하여 폐기했다, 초기화했다 이런 점이 다 가중사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서로 모순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폐기나 초기화가 증거자료를 은폐 또는 인멸하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악의나 고의성이 있다면 조사 거부·방해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는 이르지 아니 하였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경찰청에서 권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노후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사 방해로는...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표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까 진술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저희들에게 신고도 하고, 또 저희들이 조사하게 되면 성실히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데 조사에 협조한 그 정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고의는 없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2가지에 검토의견이 다르니 여기에 차라리 폐기한 점, 또 초기화한 점은 인정되나 고의성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조금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과 전혀 별개로 놓으니까 이것이 논리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단정적으로 고의적이 아니라고 쓰기는 그런 것 같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조사 협조가 미흡했다, 그 정도의 문구는 넣어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 최성준 위원장

- 단정적으로 고의적이 아니라고까지는 어찌 보면 고의적인 것에 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 증거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아마 작성 시점에서 오타가 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표현을 조금 보완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아직 해킹 해커를 잡지 못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유출시켜서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아직 물론 밝혀지지 않았고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왜냐하면 마지막 보루라고 할까, 마지막 변명이 북한 측 해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강력사건 이런 것들 영구 미제사건 중에 북한 측 소행이었다고 넘어간 것들이 과거에도 다른 분야에서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습니까? 우리 군사이버사령부가 북한 측에 해킹을 당했다, 군 수뇌부도 당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들인데 인터파크의 경우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저희 쪽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 경찰청에서 당초에 발표했을 때 '경찰총국 소행인 것 같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건에 대해서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까? 북한 측에 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드러나면 그래도 똑같이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하는 것입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저희는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해커가 북한 소행이 됐든 다른 사람의 소행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인터파크 측이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책임을 다 했느냐만 따지는 것이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알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 이기주 상임위원

- 11페이지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준금액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줄에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위반내용과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붙임 4> 자료를 보니까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 규모 이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반행위로 인해서 인터파크가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제가 지난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피심인 측과 우리 조사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저 혼자 판단인데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설정한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 기능 자체는...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프로그램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라는 기술적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하는 여부가 O/X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세모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파크 직원이 PC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냥 예를 든 것입니다. 자기 사무실 문에 시건장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프로그램 설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자꾸 다른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느라고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두꺼운 책을 놓든지 해서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계속 PC 작업을 하면서 다른 외부의 사람이 못 오도록 하든지, 이런 경계를 하면서 해야 하는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문틈을 타고 들어와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조치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안 했다 이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기본적인 프로그램 설치하는 했는데 운영상 허점이 있었다 내지는 그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개별 직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받은 대로 이행을 안 했다, 저는 이런 점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한 위반행위, 그래서 부과 기준율이 1,000분의 21 이것이 사무처에서 판단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앞에 '위

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말이 적절한 것인가? 매우 중대한, 중대한, 보통 중에 중대한이라고 판단한 논거로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위원님, 고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합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위반행위로 인한 직접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했다, 안 취했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기술적 조치다, 관리적 조치다 이렇게 하는데 100점이 아니면 안 했다고 위반했다고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1,000분의 21로 하자는 것에 동의하는데, 완전히 차단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못됐는지 미흡했는지 교육이 잘못됐는지 이런 문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나도록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에게 물어보는데 100% 이행하지 않으면 전부 이것이 위반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그 경중이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위반의 정도에 있어서 경중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커의 해킹 기법 여하에 따라서 내지는 회사마다 기술적 조치, 관리적 조치 정도의 여하에 따라서 저는 아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앞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우리는 100% 이행이 안 됐으면 위반은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반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제재의 수준하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직접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 이 말로써 그것이 충분한 것인가 하는...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는 논리적인 과정을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 안건에 있는 것처럼 일단은 인터파크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이러저러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과실로 본다, 그러면 중과실로 보는 순간에 일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되지만 여기 적은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또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가 유출됐거나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중 한두 개에 해당하면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 한 단계 감경한 것인데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굳이 이것을 아주 중한 과실로 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다가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감경할 것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이 정도 사안이면 과실은 있지만 중과실은 아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대한 위반행위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괜히 오랫동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결국 말씀하신 취지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의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앞으로든 올오어났싱(All or Nothing)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정도의 문제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조치를 했고, 관리 소홀을 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 쳐서 위반이다 이렇게 할 것이냐, 거기서부터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중대한 위반행위로 가는 것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가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논리적인 경과로 보면 어느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조금 더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에 관한 사건이 생겼을 때 대개 정액과징금을 매겨 왔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대부분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다가 이번 경우는 하나하나 따져서 정액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실상의 첫 케이스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그것은 아니고, 정액 과징금으로 갔던 사례는 위반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정액 과징금...

○ 최성준 위원장

-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액 과징금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것도 영향을 받았던 것이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망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이것이 두 번째 사례 아닙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두 번째 사례지요? 두 번째 사례인데 지난번 첫 번째 사례는 아마 과징금 1억원 이하였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소액이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1억원 이하로 과징금이 쪽 매겨지다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47억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과징금 금액이 사실상 첫 케이스로 아주 경충 뛰어서, 조금 엄격하게 우리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기주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과징금의 성격이라는 것이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쪽 들어보니까 인터파크가 이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자라고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고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고의성이 있었고 의도적이든 뭐가 있었고, 또 증거도 인멸하는데 어떤 고의성이 들어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자기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이 매길 때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그동안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이 쪽 매겨지다가 경충 뛰어서 약 50억원 가까이 매기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한 말씀을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은 그것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회가 심결제도를 강화하자고 해서 먼저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피심인 의견청취하고 그리고 시정명령을 비롯한 제재는 별도로 결정하는 첫 사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조사관들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고 인터파크 쪽의 의견서 그리고 법률대리인의 의견서를 꼭 봤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해서 피심인 측이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판단한 근거는 뭐냐 하면 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 피심인인 인터파크 쪽에서 적절히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사결과나 제재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가장 큰 근거가 여전히 쟁점에 있어서 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인터파크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조사결과와 그것을 증빙하는 여러 가지 근거자료들이 오히려 더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사관들이 조사한 내용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늘 올린 제재안이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회가 상당히 충실하게 검토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피심인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두 번이나 마련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경제적 이득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면 피심인 쪽에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서 해커가 해킹하게 된 경로를 제공했던 그러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심인의 소명, 반론 이러한 것들이 저는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사결과와 제재안에 대해서 저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니까 결국 기술적·관리적 조치 최대시간 차단 문제입니다. 결국 부과기준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매우 중대한' 내지는 '중대한' 아니면 '보통'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이 적절하고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필수적 가중·감경이나 추가적 가중·감경 요인들을 꼭 보니까 위원님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을 적정하다고 보고 밑에 보니까 개별적으로 봐도 다 적절합니다. 그래서 약간 과징금 가감의 요인이 있을 듯 하지만 이것을 보면 논리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과징금 금액으로 가서 이 논리의 전개를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좋습니다. 말씀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께서 일부 더 감경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 김석진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대로 가고, 다만 저는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보고했던 검토의견에는 분명히 고의성이 없었다, 은폐기도가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여기 추가적 가중·감경에는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20%를 10%로 혹시 낮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민해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추가적 가중·감경에서 추가적 가중이 2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로 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지요. 우리가 검토의견을 반영한다면 혹시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 김석진 상임위원

-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가고요.

○ 최성준 위원장

- 아무도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래 시정조치 보고된 안대로 그대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20%를 10%로 하면 제가 숫자가 언뜻 안 들어오는데 얼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5억원 정도 줄어듭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4.7억원 정도 빠집니다.

○ 최성준 위원장

- 4.7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42억 5,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포매팅 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초기화를 하라고 해서 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런 것들을 정상 참작할 만합니까? 그것을 사무처에서 판단해 주시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저희는 당초에 고의적인 은폐로 봤으면 30%로 가장 세게 가중을 했을 텐데 그나마 그것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20%로 간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30%를 20% 정도로 해 줬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사 거부·방해에 이를 정도면 30%까지 가능한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20%로 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로 가중했다, 30%를 가중할 것을 조금 정상 참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이미….

○ 김재홍 부위원장

- 고의성이 적기 때문에….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고의성이 적다기보다 고의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 이기주 상임위원

- 이것을 10%, 20%, 30% 이렇게만 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조사 거부·방해는 30% 이내….

○ 최성준 위원장

- 이내니까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10%, 15%, 20%, 25%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딱 있느냐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없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은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인터파크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무기구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터졌어', '불법행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하면 되겠어' 우리와 협의하는 것을 전혀 안 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을 가지고 경찰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화해라, 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 천공해서 폐기하고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고의성은 조금 적었다, 정상 참작할 만하다는 것인데 김석진 위원님 말씀도 합리적으로 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소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필수적 가중·감경 11페이지에 '기준금액에 25%를 필수적으로 가중한 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를 필수적으로 감경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단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10단위로 가는 것인지….

○ 최성준 위원장

- 5단위도 괜찮고 3단위도 괜찮고 이것은 저희에게 어느 정도 재량 여지가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부위원장님과 김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으니까 '20%를 추가적으로 가중한 후'를 15%로 하면 어떻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 모이시면...

○ 김재홍 부위원장

- 그쪽에서 계속 전체적으로 승복을 안 한다고 할까, 지금 적극 뭔가 변명, 불만을 제기하는 것인데 최대한 억울함은 없도록 해 주고, 명확하지 않으면 피심인 측에 불리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리적으로 이분들이 경찰의 요구나 경찰의 방침에 따랐다면, 그러나 실무적으로 업무적으로 이것이 방통위의 사후 규제 업무라는 것을 잘 몰랐다는 것은 실수인데...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사무처에서 판단했던 것은 당초에 인터파크 쪽에 바로 이야기했던 것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과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분명히 적시를 했고 우리는 가장 중시한 것이 '이왕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2차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신고가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제가 가장 중시해서 주의를 했고, 다만 저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방통위에 신고를 하면 이것이 밖으로 금방 드러날 것을 염려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알고 있었습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아까 태평양 법무법인 대리인 측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정황은 알지만 당초에 저희와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법무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 가지고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그 안에서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약간 위원님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절충을 해서 추가적 가중을 100분의 15 정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2억 3,600만원 정도 빠집니다. 그러면 45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금액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47억 2,560만 8,233원에서 5%만 감경하면 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95%니까 47억 2,560만 8,233원에 95%가 얼마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44억 8,000… 1,000만원 이하는 절사입니다.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44억 8,000만원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44억 8,000만원….

○ 최성준 위원장

- 예. 44억 8,000만원, 1,000만원 미만은 버린다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44억 8,000만원,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시정명령에 추가했으면 좋겠는 것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법무팀장에게 물으니깐 방통위 신고, 이용자 통지 모른다는데, 어쨌든 CISO도 있고 CPO도 있고 법무팀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정보통신망법상에 이것 관련되는 제반규정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든지, 우리 방통위에서 가야 할지 KISA에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여기에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저는 교육 문제를 명시적으로 시정명령에 담았으면 합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기는 시정명령을 간단히 써서 그렇지, 통상적으로 보통 교육과 그 교육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은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다 포함됩니다.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다 들어갑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심의·의결서에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잘 챙겨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시정조치(안) 중에 과징금 부분을 44억 8,00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68-260)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68-26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위치정보법은 저희가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서 그 의견들을 고려해서 일부 수정하게 되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원안보다는 의견에 따라서 수정안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의결주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경과 다음 쪽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9월 21일 위원회에 개정안을 보고드린 이후에 의견 입법예고 등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고자 할 주요내용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집·이용 목적변경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을 “기존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리위탁 시, 이용자 고지와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존과 같이 하나만 요구하도록 변경하고, 다만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가를 제공받고 개인정보 자체를 거래하는 행위를 이용자에게 고지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를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사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 동의 철회권에 대해서 처리정지 요구권을 추가·신설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강화된다는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거나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은 이용자가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고지하여야 한다”를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고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국외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개념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전하여 처리”를 기존과 같이 “국내에서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하여 처리”로 변경하고, 국외이전 중단명령과 관련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상당 부분 많은 내용이 <의결사항 다> ‘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의결주문은 ‘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경과 생략드리고, 주요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보시면 지난 9월 21일에 위원회에 보고드린 이후 변경 사항 등은 대부분 다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다음 7쪽 제일 아랫부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보호법에 관해서 입법예고 이후에 제출된 의견에 따라 수정된 부분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전체적인 것 다 포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입법예고 이후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충실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애초에 법안을 정비할 때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와 이용자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입법예고 이후에 지금 보고한 안에는 그러한 고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의견을 드리자면 시민단체 쪽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오히려 이용자들의 정보보호나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정비할 때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합리한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의도치 않는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그 제도의 틈을 잘 이용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개인정보 이용 철회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들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쉽게 그것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법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지금 개정된 내용들의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없는지, 또 우리가 애초에 의도치 않았던, 못했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인데 정부가 제출하겠지만 국회에서도 많은 토의,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이 개인정보 수집·관리·이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처리 절차 등을 완화하는 것인데 그동안 시민단체들, 학계 의견을 들어보면 사업자와 소비자, 이용자, 국민 그 양자 사이에서 사업자의 산업 진흥이나 편의를 도모한 측면이 강하고 개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조금 약화시켰다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잘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거는 국내 실정법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있는데 망법이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내에서 벌어지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좀 더 엄정하다고 할까 강화된 것인데 그것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전제로 깔고 이렇게 고친 것인데, 저는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의문입니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잘못되면, 이것이 유출되거나 잘못되면 그 확산 속도, 확산 범위, 피해, 영향력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일반적인 기본법이라든가 모법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망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일치시킨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스탠더드를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분야, 온라인 분야에 관한 한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우리의 법제가 잘못되면 다른 나라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예를 벤치마킹해서 들여다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법제가 엄정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이상한 인터넷 강국입니다. 인터넷 선진국, 인터넷 강국인데 사고는 많이 나고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할까, 사업자들의 책임의식, 기업윤리화도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글로벌스탠더드와도 이것이 맞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제를 강하게 해도 기업의 책임의식이나 기업윤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또 오늘도 했지만 인터파크 같은 상당히 큰 기업이 해킹을 당했다고 하지만 유출사고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인데 우리가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많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전문가들에게 의견이 들어왔는데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사업자와 국민 개인 간 개인정보보호와 산업진흥과 또 산업 편의주의 간에 균형이 깨졌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지만 입법예고까지 했고 그동안 의견 들어온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시 손대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사후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손대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너무 광범위하게 손댔고, 그것이 흐름이 대폭 완화했다는 것입니다. 산업진흥 쪽이었고 사업자의 편의주의에 너무 흘렀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는 약화시켰고, 그래서 양자 간에 균형이 깨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여기에 대한 많은 설명, 그것을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나 논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뒤에 어떤 부작용 문제점이 없는가를 예의주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도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건 중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은 아니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전반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저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들어온 것이 언제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2005년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2005년이고 그다음에 그 후 6년이 지나서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년 사이에 개인정보 상황이 변화가 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전동의에 관한 여러 가지 예외규정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 오프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05년에 만들어졌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또 그 당시 상황을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의 것을 2016년에 다시 개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일부 완화했다, 합리화했다고 하는 부분은 모두 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맞춰서 정합성을 갖도록 한 부분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보호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좋지 못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가 완화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안이유를 가지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고 기술변화, 시장변화에 부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사전 동의 예외 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전 동의 안 받고 하는 경우를 대폭 인정 확대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경우냐?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급박한 생명·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느낌이, 느낌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다릅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선은 동일한 수집·이용 목적으로 본다’ 저는 이것이 되게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에 오래 전에 만든 제도를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지, 이것이 완화, 예외를 대폭 인정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처리위탁 절차개선도 그렇고 유상으로 제3자 제공 시 고지를 의무화한다든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신설한다든가, 그리고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국회에 가서 설명할 때 우리 제안이유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IoT 산업이다, 빅데이터, 클라우드다, 산업 진흥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과 지금까지 운영해 온 개인정보보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어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층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설명하고 이해를 잘 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노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의결안건 나>와 <의결안건 다>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건 가결되었습니다.

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6-68-26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의결주문은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경과는 생략드리고, 주요내용은 위치정보사업 허가 소요기간 단축과 양수·합병 신고서류 간소화이기는 합시다만 지난 9월 21일에 위원회에 보고드린 이후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이 없었고, 그래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마.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6-68-263~27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마>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은 지난번에 피심인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 의견과 연이어서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주요 쟁점에 대해서 3가지 정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의 근거조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행령 [별표 5] 제5호 마목 및 바목에 관련된 주장이기는 합시다만 바목에 관련된 부분은 결합판매 고시에 명시된 금지행위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품 등 경제적 이익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마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4종결합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번 경품 규제의 근거법령은 사업법 및 시행령 [별표 4] 마목의 1로서 소급 적용 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관련된 판단은 지금 현행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조치(안)를 준비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9쪽을 보시면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통신4사와 CJ헬로비전·티브로드·딜라이브 3대 MSO에 대해서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그다음에 3대 MSO에 한해서 이용약관의 변경,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및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결과 보고를 명령하고, 다만 현대HCN 계열4사와 씨엠비 계열4사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용자의 피해가 미미함에 따라 '경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징금은 통신4사와 3대 MSO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현대HCN 계열4사와 씨엠비 계열4사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용자의 피해가 미미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준금액은 관련된 매출액에 시장점유율, 가입자 수, 위반율, 위반건수, 위반금액, 분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LGU+와 SKB는 1.25%, SKT는 1%, KT는 0.75%,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딜라이브는 0.25%를 적용하고 필수적 가중·감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추가적 가중·감경은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한 KT는 20%, SKB·LGU+·SKT·CJ헬로비전·티브로드·딜라이브는 각 10%씩 감경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KT·SKB·LGU+·SKT는 각 5%씩 감경하고, 2015년도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가 최우수인 SKB는 15%, 우수인 KT·LGU+·SKT는 5%씩 감경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최종 과징금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총 106억 9,89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9페이지의 <나> 과징금 부과, '통신4사와 3대 MSO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별표 6]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1% 범위 내입니까?

○ 통신시장조사과 이이용 사무관

- 예, 1% 범위 내입니다.

○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여기에서 말한 1%라는 것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가 아니라 전체 매출액의 1%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전체 매출액입니까?

○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다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지난번에 일부 피심인의 의견진술에도 나왔듯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부과기준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반율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부과기준율을 결정할 때 시장점유율이나 가입자 수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위반율을 당연히 보고, 또 위반건수, 위반금액, 또 경품의 분포의 정도, 시장질서 교란 주도 여부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10페이지에 보면 제재 과징금 기준금액에 정리가 몇 단계에 걸쳐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규제하는 이유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차별인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점유율과 가입자 수이고, 이용자 차별 이것은 위반금액이 중요한 것이고, 또 위반을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실제로 잘 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매우중대, 또 중대에서 2~3%에서 각 사별로 평가해서 말하자면 부과기준율을 산정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굉장히 다각적으로 정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기준금액에 '이용자 피해의 정도' 해서 위반율, 위반건수, 위반금액, 분포의 정도 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 안전에 어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안전에는 없습니다만 혹시 별도로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를...

○ 최성준 위원장

- 옆에 자료...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아는데 이 안전에는 그 내용이...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세부적인 내용은 명시는 안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도 첨부를 하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붙임 1>에 나와 있는 현안은 제가 보기에 1차적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위반율, 위반건수, 위반금액, 분포의 정도는 1차적인 자료를 분석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거기에 같이 첨부가 되면 크게 문제가 됩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별첨 1>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전부 할 것 없이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전체 제공 수준 현황에 추가로 올리도록 하시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바. 2015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2016-68-27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바> '2015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 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15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2015년도에 실시한 방송의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도 방송평가 개요 중 평가 대상은 총 153개 사업자 351개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 중 네 번째 동그라미 두 번의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방송사의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 2015년도 방송평가 결과입니다.

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입니다. 먼저 지상파TV의 경우 KBS1, SBS, MBC, KBS2 순이며 전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총 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 간접광고 고지 위반 등 과태료 처분 건수 증가가 점수 하락의 요인이 되었으며, 자체심의와 재난방송 등 일부 항목에서는 평가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방송사업자별 평가내용은 안건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민방 TV는 TBC, UBC, TJB, 강원, JTBS, JTV, KBC, CJB, KNN, OBS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상파 라디오의 경우는 AM의 경우 MBC, KBS1, SBS, KBS2 순이며, FM의 경우 MBC, SBS, KBS1, KBS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지상파TV의 경우 지상파 계열은 KBS1, MBC, SBS 순이며, 비지상파 계열은 한국DMB, 유원미디어, YTM DMB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상파 방송사업자입니다. 먼저 종편PP의 경우는 JTBC, MBN, TV조선, 채널A 순으로 나타나 전년과 비교하여 2위와 3위의 순위가 변동하였습니다. 다음 보도PP의 경우에는 YTN의 점수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스Y에 비하여 평가점수가 높아 전년과 동일하게 YTN, 뉴스Y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성방송·MSO입니다. MSO는 CMB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CMB, HCN,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순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총 점수가 전년 대비 21.07점 하락하였습니다. 홈쇼핑의 경우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KTH, 아이디지털 순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데이터홈쇼핑 사업자 2개사에 대한 방송평가가 진행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첫 페이지 방송평가 개요를 보면 내용과 편성·운영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배점이 다 영역마다 균등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배점이 영역은 똑같습니다. 지상파를 기준으로 해서 지상파가 총 900점인데 300점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 배점을 만들 때 제가 관여를 안 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얼핏 제 생각에는 내용영역에 심의규정을 준수한다든가 프로그램 질을 평가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평가라고 봅니다. 편성도 물론 중요하고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동일한 배점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은 운영을 잘해서 재무적인 안정성만 좋다면 충분히 다른 콘텐츠가 부족하고 시청자들이 볼 때는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데 대한 어떤 평가가 제대로 가중 평가되지 않고, 소위 가중치가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영역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나 종편 포

함해서 순위가 바뀌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편성영역인데 어린이 프로그램이 마치 순위 평가에 좌우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지금 어린이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은 크게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편성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시간대도 중요한 배점에 들어가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종편에서 특히 종편PP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항목이 종편 4개사가 모두 0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편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종편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 안 해도 제재를 따로 받지 않습니까? 평가 때만 적용을 받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다른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없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이 평가에서 받는데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어린이 프로그램 전체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7시~22시까지 얼마나 편성했는지, 그다음에 어린이 프로그램에 교육정보를 얼마나 파악했는지 그런 부분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15년도에 가서 비로소 JTBC가 처음으로 편성해서 7.5점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아지는 비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나중에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할 때 평가영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시청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지, 똑같은 3개 영역이 균등한 배점이 된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말씀하신 답변 중에 답변은 아니지만 내용·편성·운영영역이 전부 300점으로 균일하게 분배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질 평가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방송심의 제규정 이런 부분들은 그 속에서 배점이 조금 다릅니다. 방송심의 규정은 그 중에서도 점수 배점이 높아서 100점 그다음에 프로그램 질 평가는 70점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점수 배분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저는 전체 배점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KBS1 채널 같은 경우도 어린이프로그램 항목에서 전년 대비 30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일정시간대에 편성했느냐를 평가하는데 일정시간대 평가 편성비율이 작년에 한 5.1%에서 이번에 2.4%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편성시간도 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를 들어서 어린이 프로그램이 새벽시간이나 아무도 보지 않는 심야시간에 편성이 된다, 이런 예가 있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런 것은 우리가 빼고 아예 안 들어갑니다. 7시부터 22시, 10시까지의 편성비율을 측정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 배점이 평가에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납득이 가지 않고 개선점으로 앞으로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페이지 보도PP를 보면 YTN과 연합뉴스TV의 점수 차이가 82.25:82.09 아주 미세한 차이에 불과합니다. 0.16 정도 되네요. 이런 차이밖에 없는데 1위와 2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지요. 우리가 순위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현격한 어떤 차이도 아니고 이것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다른 지상파나 다른 종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편도 보면 MBN이 80.64, TV조선은 80.57, 0점 몇 차이입니다. 0.1, 0.09, 이런 차이인데 우리가 순위를 발표하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이것을 다 받아가서 각 언론사가 우리는 1등을 했노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전합니다. 그렇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이런 미세한 격차로 1위가 되고 2위가 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그램에 정말 고급프로그램을 내고 시청자에게 호응을 받고, 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내서 콘텐츠 질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홀히 했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빠져서 0.0 몇 차이로 2위가 됐다, 왜냐하면 이런 순위에 자꾸 집착하고 이것을 선전 도구화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발표인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제기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물론 순위를 안 매길 수는 없지요. 그래야만 선의의 경쟁도 유도할 수가 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 굳이, 예를 들면 1% 이하가 되면 절사를 해서 공동 2위가 된다는 차라리 이런 제도도 도입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보면 YTN 같은 경우는 재무건전성 항목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자체심의라든가 편성 규정 준수 이런 것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재무건전성은 회사 내부의 일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보는 데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재무적으로 건전성이 확보되면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제작의 질을 높이는 것과는 크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점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평가기준 배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인데 제가 방송평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 주 시청층에 대한 편성을 우리가 배점을 매기게 되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저녁시간이네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종편 같은 경우는 과연 주시청시간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지상파 기준대로 저녁시간이 과연 종편의 전략적인 골드타임이냐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 대한 우리 차별의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비중을 두는 시간대는 낮시간 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시청시간대를 종편은 조금 달리 설정해서 지상파와 같이 내지 말고, 낮시간대에 자기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비중을 두는 시간에 주시청시간대 개념을 적용한다면 그때 편성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 전부 보도 내지 시사, 토크쇼를 다 합니다. 다 뉴스입니다. 출연자 나와서 하고 있고, 다 뉴스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솔직히 정확한 편성의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편의 경우에 채널의 매체 특성상 주시청시간대를 지상파와 똑같이 저녁시간대에 맞춰서 저녁시간대의 보도비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낮시간대가 주시청시간대로 자기들 스스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편성평가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런 방송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가 화두로 던집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내년에 또 방송평가를 하기 위해서 방송평가 세부기준 배점을 다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정리할 것이지 않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의견들이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다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한 방송평가위원장으로서는 처음에 말씀드리려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지금 김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방송평가위원회에서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말씀하신 주시청시간대 종편의 경우는 다른 지상파들과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이야기했고 방송평가위원들도 다수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것은 다음에 고쳐야 합니다. 그다음에 내용·편성·운영 영역의 배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2014년부터 했습니다. 배점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1,000점일 때는 오히려 운영영역의 점수가 더 많았던 것을 고쳐서 4:3:3으로 가자고 했다가 나중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점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배점이 없어지는 바람에

900점이 돼서 3:3:3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 전부터 내용영역에 김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유로 배점을 훨씬 더 비중을 높여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방송평가를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어차피 이 결과가 모든 방송사들의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40%가 반영되는 것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40% 정도 반영되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40%가 다 반영됩니다.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나라 전국에 153개 방송사업자 351개 방송국을 전부다 매년 평가작업을 해서 기간이 되면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40%씩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 이것이 너무 일이 방대하고 자료도 하여튼 분량이 방대해서 평가방법, 절차를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도 보니까 방송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는 것으로 써 놓았고, 실제로 평가작업은 방송평가 실무지원단에서 해 옵니다. 우리 사무처와 또 외부자문, 우리가 아웃소싱한 회사에서 해 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평가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량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것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외부에 맡겨서 우리 사무처와 함께 엄청난 양의 자료를 쌓아놓고 방송평가위원회는 정말 심의하는 것처럼 하는데 원래 법적으로 평가작업은 방송평가위원회 몫입니다. 그래서 실무 행정 내용을 어떻게 고쳐야 하지 않을까? 날짜를 늘리든가 해서 해야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데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해도 제대로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임기는 끝나 가지만 3년을 이어온 것이 바로 내용·편성·운영영역의 배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내용영역에 방송 공정성 평가를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계속 논란이 있다가 한 번인가 용역을 받고 말았고, 다만 심의규정 준수 이것으로만 반영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빨리 해결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방송평가 작업이 재승인·재허가와 직결되는 만큼 방송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기한 문제점이 있는데 회의록 다 메모하라고 했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을 정리해서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은 정리해서 한번 티타임에 보고하셔서 그렇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위원님!

○ 김석진 상임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6페이지를 보면 종편PP의 심의규정 평가에서 심의규정 준수 항목이 종편4사가 모두 다 하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하락된 것입니까? 방심위 심의건수가 올라가서 제재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심위의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제재건수가 늘어나거나 과중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더 하락한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4사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런 부분은 디테일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방송의 내용 심의입니다. 이 내용 심의를 우리가 방심위에 맡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잘 모니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4사가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순위 랭킹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 위원님 의

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이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에 점수가 반영되니까, 순위가 반영되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점수가 반영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이것이 과락 개념이 있습니까? 80점 미만이면 어떻게, 90점 이상이면 어떻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점수 매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상파TV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하면 KBS1 TV가 85.1, SBS가 81.19, MBC가 80.83, KBS2가 78.02 이렇게 지상파인 경우에는 점수의 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방을 보면 89.4, 87.6, 87.3 그다음에 86, 85, 84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꼭 순위를 매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꼭 보니까 점수 차이가 아주 적은데 순위는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주 많은데, 저는 대학평가인 경우에 랭킹은 국제적으로 그런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절대적인 점수 차이는 아주 근소한데 랭킹에 차이가 있어서 점수 차이는 그냥 무시되고, 이렇게 랭킹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저는 이것이 소모적이고 과당경쟁, 아주 소모적인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통신 쪽도 통신 품질평가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면 99점과 100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Pass와 Fail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이고, Pass냐 아니냐 그렇게만 보는 것도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아까 점수를 말씀하실 때 꼭 보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도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줄을 세우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아주 사회적인 불필요한 코스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내년에 할 때 진지하고 심각하게 전반적으로 적극 검토해 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정책국에서 이용자보호 관련 해서도 평가하고, 평가할 때 초기단계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유인하고 리드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데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랭킹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방통위의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평가하는데 순위를 매기는 그런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안전에 그렇게 표기를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순위를 썼는데 이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가 있는데 실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는

순위가 나타나지 않고 각 항목별로 점수가 나타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1위라는 타이틀 자체가 없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예 없고, 이 <표> 보면 편성영역별로 크게 나누고 세부항목이 다 나누어져서 세부항목별 점수가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합계도 공개가 됩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합계도 공개되지만 세부항목별 점수가 공개되기 때문에 항목별 점수차가 어디가 어떻게 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순위는 안 쓰고...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순위는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일단 이 자료에 이렇게 순위를 쓰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도PP 수가 두개인데 YTN은 82.25이고 연합뉴스TV는 82.09입니다. 두개 있는데 하나는 1위이고 하나는 2위입니다. 아까 FM을 보니까 MBC FM이 월등하고 그다음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평가를 할 때 질적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조금 뛰어나게 점수를 많이 받은 방송사에 대해서는 여기는 정말 평가결과가 우수하다, 나머지는 비슷하다 이런 식의 코멘트 위주의 주관적인 평가결과가 필요하지, 숫자 가지고 0점 몇 가지고 우리가 올림픽도 아닌데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앞으로 안건 내용에 저희들이 순위를 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안건 내용에 순위가 아니고 점수를 넣는다거나 그렇게 하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 보고 양식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어쨌든 홈페이지에는 이런 순위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안건 자료에만 이해편의를 위해서 썼는데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이 안건 자료는 대외적으로 언론에도 공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순위를 빼고 공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런 식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순위보다도 총액 점수를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 안 드리려다가 여러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기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가..., 방송평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송사의 공적책임 그다음에 공공성 구현이지요, 공정성은 논란이 있으니까 빼더라도. 국장님, 그렇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이기주 위원님께서 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이야기했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체별로 지금 이렇게 쪽 다 같이 평가해야 하는 것이냐? 매체별로 책무가 다 다릅니다. 차별화해야 합니다. 지상파, 지상파에서 공영방송 그리고 종편·보도PP, 홈쇼핑을 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평가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방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지요. 그것이 방송프로그램이든 경영이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공적 영역에 있는 매체들, 특히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지상파방송들의 역할이나 위상이 강화되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됐던 것이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정성 문제라든가 공적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를 강화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은 처음 제3기 방통위원회가 출범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일부는 의견 일치가 돼서 평가척도로 반영된 것도 있고, 특히 공정성 같은 경우는 이견이 아주 컸지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송평가 이 틀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 특히 공영방송의 책무나 위상 문제 이런 것들과 전부 연계해서 평가제도에서 반영해야 할 것 반영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른 것과 연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들은 논의된 대로 정리해 주시고, 만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한다면 추후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과제로 정리해 주십시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 **김석진 상임위원**

- 아까 순위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긴급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공표할 때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 종합점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칸에 종합점수 나오는 것, 총점은 아예 공개 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역별로 점수만 나오게, 그러면 그것을 합산해서 어쨌든 총점을 굳이 매겨서 순위를 자기들이 1등이라고 고집해서 막 선전하기 시작하면 평가제도의 우리 근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까 그런 의견들 다 주셨으니까 이번부터라도 순위가 나타나는 총점은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 **고삼석 상임위원**

- 생각이 다르니까 나중에 논의를 한번 하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총점 부분은 어차피 각 3개 영역을 더하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 **김석진 상임위원**

- 자기들이 하더라도 일부러 우리가 만들지 말자는 것이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이렇게 정리하지요. 순위는 안 나간다니까 늘 하던 방법대로 올해는 그대로 공개하고, 지금 김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논의할 때 다른 개선방안과 함께 그때 논의하도록 하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렇지 않아도 3년간 방송평가위원장을 맡아서 3년간 3번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방송평가 결과 순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항목이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이 있고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점수로 다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성적평가를 할 때도 점수와 함께 A, B, C, D, A-, A0, A+, B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91점과 92점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냥 91점, 92점을 묶어서 A- 이렇게 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방안도 고민을 했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절차에서 평가항목은 많고 배점은 많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다 줍니다. 그것을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점을 숨기고 총점을 낼 때는 수, 우,

미, 양, 가, A, B, C, D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언론사들이 다 또 총점을 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보도분야에서 1위, 교양분야에서 1위, 오락 콘텐츠에서 1위 이렇게도 자사 홍보 선전을 합니다. 우리가 말릴 수 없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은 여러 항목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심지어 20점, 30점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되 소계나 총계를 낼 때는 점수로 내지 말고 수, 우, 미, 양, 가 같은 것으로 하고, 총점도 그렇게 모아서 수, 우, 미, 양, 가로 해서 1점, 2점 차이로 순위 차이를 내지 말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선방안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 개선안을 놓고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하도록 하고, 좋은 의견 주신 것들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6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23분 폐회 】